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31
----------	-------

발의연월일 : 2026. 3. 12.

발 의 자 : 박용갑 · 윤준병 · 조인철
박상혁 · 정준호 · 박희승
이해식 · 진성준 · 허영
어기구 · 박홍배 · 조승래
이연희 · 소병훈 · 이성윤
복기왕 · 노종면 · 김용만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100분의 5는 택시 감차보상 재원으로, 100분의 4는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고 있음.

또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택시 산업은 자율주행 기술의 도입, 장기적인 경기침체, 플랫폼 운송사업의 확산 및 택시 수급 불균형 등으로 인해 운송사

업의 경영난과 택시종사자의 실질수입 감소가 심화되고 있으며, 택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종료될 경우, 종사자의 실질소득이 급감하고, 이에 따른 숙련 인력의 대거 이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결국 교통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 상승으로 직결될 우려 또한 매우 큼.

이에 부가가치세 경감 규정 및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택시 산업의 구조적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7 및 제111조의3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7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3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 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 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 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u>2026</u> <u>년 12월 31일</u>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 ⑧ (생략)</p> <p>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 별소비세 등의 감면) ① 「여 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 2항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 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u>2026년 12</u> <u>월 31일</u>까지 공급하는 「개별 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 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 (이하 이 조에서 “부탄”이라 한</p>	<p>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 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 ----- ----- ----- ----- ----- <u>2029</u> <u>년 12월 31일</u> ----- -----.</p> <p>② ~ ⑧ (현행과 같음)</p> <p>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 별소비세 등의 감면) ① ----- ----- ----- ----- ----- ----- -----<u>2029년 12</u> <u>월 31일</u>----- ----- ----- -----</p>

<p>다)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한다.</p> <p>② ~ ⑩ (생략)</p>	<p>----- ----- -----.</p> <p>② ~ ⑩ (현행과 같음)</p>
--	---